

## 장사시설 폐지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구 분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종교단체 [ ]법인		
시 설 종 류	[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연월일		
시 설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치·조성자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폐 지 연월일			
폐 지 사 유			
폐 지 내 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신·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